

청소년의 평화이념 및 국민간 상호존중과 이해의 증진에 관한 선언

Declaration on the Promotion among Youth of the Ideals of Peace, Mutual Respect and Understanding between Peoples

1965년 12월 7일

총회는 유엔 헌장의 규정에 따라, 국민들 스스로가 다음 세대를 전쟁의 재앙으로부터 보호하기로 결정했음을 상기하고,

나아가서 유엔은 그 현장에서 인간의 기본권과 인간의 존엄성 및 인간과 국가들 사이의 평등권에 대한 신뢰를 확인하였음을 상기하며,

"세계인권선언", "식민지 국가와 인민의 독립 부여에 관한 선언",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제거에 관한 유엔 선언", 평화에 대해 여하한 위협을 야기하거나 조장하는 모든 형태의 선전을 비난하는 1947년 11월 3일의 총회 결의 110(II), "아동의 권리선언", 그리고 청소년을 평화와 국민 간의 상호 존중 및 이해의 정신으로 양육하는 것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인 1960년 12월 18일의 총회 결의 1572(XV)에 구현된 원칙들을 재확인하고,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의 목적이 교육, 과학 및 문화를 통하여 국민들 간의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평화와 안전에 공헌함에 있음을 상기하고, 청소년을 국제적 이해와 협력 및 평화의 정신으로 교육하기 위한 유네스코의 역할과 기여를 인식하며,

인류가 대재난으로 고통당할 때, 청소년의 괴로움이 가장 컸고 청소년의 희생자 수가 가장 많았던 사실을 고려하고,

청소년은 보장된 미래를 가지고자 희망하며, 평화, 자유 및 정의는 그들의 행복을 향한 욕구가 실현될 수 있게 하는 보증 중의 하나임을 확신하며,

인간 노력의 모든 분야에서 청소년이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과 그들이 인류의 운명을 인도하도록 예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나아가서 위대한 과학적, 기술적, 문화적 성취의 시대에 청소년의 에너지, 열정 및 창조력이 모든 국민들의 물질적이고 정신적인 진보를 위해 바쳐져야 함을 더욱 염두에 두며,

청소년이 자신의 나라가 지니고 있는 문화적 유산과 온 인류의 문화적 유산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발전시켜야 함을 확신하고,

나아가서 평화정신 및 국민간 상호 존중과 이해의 분야에서 행해지는 청소년 교육과 청소년

사이의 인적 및 사상적 교류는 국제관계를 개선하고 평화와 안전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확신하며,

본 "청소년의 평화이념 및 국민간 상호 존중과 이해의 증진에 관한 선언"을 선포하고, 각국 정부와 비정부기구, 그리고 청소년 운동 단체가 이 선언에 제시된 원칙을 인식하고 적절한 조치를 통해 그 원칙의 준수를 보장하기를 요구한다.

원 칙 I

모든 인간과 제국민의 평등권, 경제 사회적 진보, 군비축소, 그리고 국제적 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촉진하기 위해 청소년은 평화, 정의, 자유 및 상호 존중과 이해의 정신으로 자라야 한다.

원 칙 II

부모나 가족이 주는 안내 및 청소년을 위해 의도적으로 제공되는 가르침과 정보 등 중요한 수단을 포함한 모든 교육수단은 청소년들 사이에 평화, 인간성, 자유 및 국제적 유대의 이념과 국민들이 더욱 가까워지는데 도움을 주는 다른 이념들을 고취시켜야 하며, 평화의 보존과 유지, 그리고 국제적 이해 및 협력의 촉진 수단으로서 유엔에 맡겨진 역할에 대해 청소년들이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원 칙 III

청소년은 종적, 피부색, 인종적 출생성분, 혹은 신념에 대한 차별 없이 온 인류의 존엄성과 평등성에 관한 이해 속에서, 그리고 인간의 기본권과 인민의 자결권에 대한 존중 속에서 자라야 한다.

원 칙 IV

모든 국가의 청소년들이 본 선언의 취지에 따라 교육, 문화, 스포츠 활동을 위해 모일 수 있도록, 차별이나 그에 유사한 행위 없이 교류, 여행, 모임, 외국어 학습, 도시와 대학간 결연을 장려하고 촉진하여야 한다.

원 칙 V

국가적 및 국제적 청소년 단체가 유엔의 목적, 특히 국제 평화와 안전, 그리고 국가의 동등한 주권존중에 근거한 국민들 간의 우호관계를 촉진하고, 식민주의와 인종차별 및 여타 인권침해의 궁극적 폐지를 촉진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본 선언의 취지에 따르고자 하는 청소년 기구들은 젊은 세대를 이러한 이상에 따라 교육하는 일에 아무런 차별 없이 기여할 수 있도록 각자의 활동 영역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러한 기구들은, 결사의 자유의 원칙에 따라, 그리고 본 선언의 원칙과 국제연합 헌장에 명시된 국제연합 목적의 정신에 비추어, 사사의 자유로운 교류를 촉진하여야 한다.

모든 청소년 기구들은 본 선언에서 밝힌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원 칙 VI

청소년 교육의 주요 목적은 그들의 모든 재능을 개발하고, 그들이 보다 높은 도덕적 자질을 획득하고, 평화, 자유, 만인의 존엄과 평등의 고상한 이상에 대해 깊은 애착을 가지며, 인간과 인간의 창조적 업적에 대한 존경과 애정에 고취되도록 훈련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가족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청소년은 자신들이 관리하도록 소명받은 이 세계에 대해 책임감을 의식해야 하며 인류 행복의 미래에 대한 확신으로 고무되어야 한다.